##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11

발의연월일: 2020. 10. 27.

발 의 자: 김성주·허종식·이은주

강선우 · 최종윤 · 이용빈

송옥주 · 김경만 · 최혜영

고영인 · 정춘숙 · 서영석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리보호된 아동의 원활한 가정복귀와 보호종료 후 아동에 대한 가족 지지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아동과 가족 간 지속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면접교섭이 필수적이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분리 보호된 아동의 가정복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되, 면접교섭의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 다수의 국내외 연구사례는 보호아동이 친부모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함으로써 갑작스러운 분리에 따른 심리적불안을 해소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음.

이에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부모 와 분리된 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적응과 건강한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부모가 없는 보호아동의 경우에도 조부모·형제·자매 등과 지속적인 가족 관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또한 면접교섭이 보호아동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제한 규정을 함께 마련함(안제15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면접교섭 지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아동의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5조의4(면접교섭 지원) ① 시
	<u>•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u>
	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
	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아동의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
	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
	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
	<u>다.</u>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